

「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(안 제4조)
- 재정지원 근거 규정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규정(안 제6조~안 제7조)
- 감염병대응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8조~안 제9조)
-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-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및 포상 규정(안 제11조~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민의 건강에 위해(危害)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·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은 필요함.
- 제도적으로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및 구성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보공유로 구미시의 감염병 위기 대응력을 높여줄 것으로 판단됨.